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앙공급팀 재료 연간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담당"이라 함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우리병원 계약담당과 중앙공급팀 진료재료 등 단가계약을 체결한자(법인,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지시 후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할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지정한 기일까지 교체에 응해야 한다.

③ 병원이 요구하는 최소 수량을 안전 재고로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물품의 재고는 계약자가 관리한다.

④ 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예정수량의 증감)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환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수량이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금액 적용 및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한다.

1. 단가계약 체결한 금액이 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관(국립대학교병원 등) 가격보다 상당 수준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거나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시 금액이 삭감되었을 경우
3. 위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 병원은 초과 금액을 환수하고 납품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발주량은 인지된 단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금액으로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한다.
4. 단가계약 체결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 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단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 환수조치 등은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기존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7. 동일품목의 계약 외 다른 규격의 사용이 발생할 시, 단가계약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와 합의하여 동일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이행한다.
8.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제8조(계약금의 환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3.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조치한다.

제11조 (대금의 청구) 월별로 본원이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본원 대가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12조(제3자 양도금지) 계약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단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단, 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인수합병에 따른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조건, 현품설명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4조 (기타) ① 계약담당과 계약자간의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물품의 불량 또는 납품연기 승인을 얻지 않고 지체하여 진료 차질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본원이 계약자에게지불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진주 또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법원으로 한다.

⑥ 향후 본원사정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